

2026년 2분기 행정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6. 6.

행 정 국

고유가 피해지원금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6. 3. 30.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서울시민
- 지급기간 : (1차) '26.4.27.~5.8. / (2차) '26.5.18.~7.3. ※사용기한 : 8.31.
- 사 업 비 : 784,930백만원 (행정안전부 2차 확정예산 통보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금 액	784,930	549,451	141,287	94,192
비 율	100%	70%	18%	12%

□ 간주처리 사유 및 내역

- 전 국가적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차로 교부된 국비에 대한 간주처리
- 간주처리 내역 : 53,843백만원 ('26. 5. 14. 교부 통지, '26. 5. 20. 간주처리)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부담기관	예산과목	기정예산	변경예산	주관부서
보조금 (국고보조금)	495,607,551	549,451,000	행정안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x491,125,992) 642,431,925	(x544,752,390) 696,058,323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4,481,559) 6,096,904	(x4,698,610) 6,313,955	

※ 사업명 : (정책)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단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세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 제2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495,607,551	53,843,449	549,451,0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495,607,551) 648,528,829	(×53,843,449) 53,843,449	(×549,451,000) 702,372,278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491,125,992) 642,431,925	(×53,626,398) 53,626,398	(×544,752,390) 696,058,32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481,559) 6,096,904	(×217,051) 217,051	(×4,698,610) 6,313,955

○ 제2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 결정 통지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2차 교부 결정 통지

1. 재정정책과-2511(2026.5.12.) 호, 재정정책과-2528(2026.5.12.) 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차)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부산광역시(경제정책과),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인천광역시(민생담당관), 광주광역시(경제정책과), 대전광역시(일자리경제정책과), 울산광역시(경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경제정책과),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 충청북도지사(경제기업과), 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 전라남도동무지역본부장(일자리경제과), 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과), 경상남도지사(행정과), 경제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

주무관 남윤희 행정사무관 대결 2026. 5. 14. 과장 전결
정승희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2570 (2026. 5. 14.) 접수 자치행정과-7251 (2026. 5. 14.)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www.mois.go.kr

전화 044-205-3724 /전송 044-204-8964 / ska9475@mail.go.kr / 대국민 공개

○ 국고보조금 결정 통지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불임의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 보조사업자 : 17개 시·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6. 4 ~ 8월
- 사업규모 : 국비 47,876억원
- 보조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서울 70%, 그 외 지자체 80%)
- 사업내용 :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교부목적

-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사업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지원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10 일반·지방 행정	013 지방행정· 재정지원	1300 지방재정경제	1350 긴급재정지원	302 고유가 피해지원금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국고보조금(2차)			교부액			교부잔액
	계	피해지원금	부대비용	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총계	907,566,247	904,428,630	3,137,617	4,739,832,760	3,832,266,513	907,566,247	-
서울	53,843,449	53,626,398	217,051	549,451,000	495,607,551	53,843,449	-
부산	70,050,300	69,817,616	232,684	385,340,960	315,290,660	70,050,300	-
대구	56,269,050	56,084,756	184,294	280,309,280	224,040,230	56,269,050	-
인천	47,360,392	47,172,904	187,488	257,860,400	210,500,008	47,360,392	-
광주	30,425,169	30,323,356	101,813	160,499,840	130,074,671	30,425,169	-
대전	28,991,857	28,894,728	97,129	153,874,320	124,882,463	28,991,857	-
울산	15,148,682	15,097,632	51,050	101,454,880	86,306,198	15,148,682	-
세종	5,244,350	5,226,832	17,518	31,980,560	26,736,210	5,244,350	-
경기	164,966,609	164,308,056	658,553	943,678,560	778,711,951	164,966,609	-
강원	41,556,145	41,421,388	134,757	184,095,200	142,539,055	41,556,145	-
충북	43,050,794	42,912,052	138,742	186,248,080	143,197,286	43,050,794	-
충남	56,956,772	56,775,280	181,492	245,267,280	188,310,508	56,956,772	-
전북	51,421,112	51,257,828	163,284	234,197,840	182,776,728	51,421,112	-
전남	60,613,907	60,425,864	188,043	244,065,280	183,451,373	60,613,907	-
경북	77,020,218	76,776,100	244,118	324,695,520	247,675,302	77,020,218	-
경남	87,740,982	87,457,724	283,258	382,504,400	294,763,418	87,740,982	-
제주	16,906,459	16,850,116	56,343	74,309,360	57,402,901	16,906,459	-

※ 피해지원금 비용과 부대비용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상호 융통 불가

※ 부대비용(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료, 홍보비)은 부대비용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상호 활용 가능

(단, 인건비는 읍면동별 보조인력 1명이상 만드시 채용 후 활용 가능)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①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교부 신청서 상 자부담액을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6.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7.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조사업자(자치단체)의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 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 함

②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가.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사업자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가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다.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기타 보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4]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